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북한이탈주민 ‘신청에 의한 병역면제’ 폐지 〉
■ 한기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039호)

2026. 8.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문 성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한기호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2. 25.
3. 회부연월일 : 2026. 2.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준비역에 해당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병역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일반 병역의무자와 동일한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병역준비역인 북한이탈주민 역시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의 병역의무 이행을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제2호 삭제 등).

Ⅲ. 검토의견

□ 현행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은 본인이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에 의한 병역면제 규정을 삭제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병역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려는 것임.

-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에 의한 병역면제 규정 삭제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의 연기, 병역의무 이행일의 연기 등을 함께 규정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0조(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제60조(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①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북한이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1항제1호부터 <u>제3호</u>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 ~ ⑥ (생략) 제61조(의무이행일의 연기)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연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 3. (생략) <u><신설></u> 제6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준비역으로서 <u>제1호(신체등급이 6급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u> 또는 <u>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u>은 원할 경	<u>탈주민</u> ② ----- ----- ----- ----- -----<u>제4호</u>----- -----.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1조(의무이행일의 연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 제6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① ----- -----<u>제1호(신체등급이 6급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u>에 해당하는-----
---	---

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고,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체등급이 5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중 19세 이전에 장애상태가 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조정되거나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1. (생략)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 하여 온 사람

3. (생략)

② (생략)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 ⑦
(생략)

⑧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illegible]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_____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	<삭제>
⑨ ~ ⑬ (생략)	⑨ ~ ⑬ (현행과 같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¹⁾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은 일반 외국인과 달리, 「대한민국헌법」 제3조의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본다’는 원칙에 따라 별도의 귀화 절차 없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²⁾에 따른 보호결정과 주민등록 부여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됨.

□ 「대한민국헌법」 제39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도 현재 「병역법」에 따르고 있음.

□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병역의무가 존재하나, 「병역법」 제64조제1항³⁾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병역면제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보호 결정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한다.

신청에 의해서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은 「병역법 시행령」 제134조4)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병역면제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면제 사유를 확인한 경우, 「병역법」 제12조 제4항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에 의하여 병역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최근 10년간 1,259명의 북한이탈주민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을 면제받은 바 있고, 현역병 입영 현황은 저조한 상황임.

< 최근 북한이탈주민 병역면제 현황 >

(’25. 12. 31. 기준, 명)

’25년	’24년	’23년	’22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계
46	57	81	88	85	160	200	149	180	213	1,259

3) 「병역법」 제6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준비역으로서 제1호(신체등급이 6급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고,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체등급이 5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중 19세 이전에 장애상태가 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조정되거나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1.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3.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4) 「병역법 시행령」 제13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② 법 제6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병역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병역면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병역면제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병역면제 사유를 확인한 경우와 제4항에 따라 등록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에 의하여 병역을 면제하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 최근 북한이탈주민 현역병 입영 현황 >

('25. 12. 31.기준, 명)

'25년	'24년	'23년	'22년	'21년	'20년	'19년	'18년	계
1	4	-	1	1	-	-	2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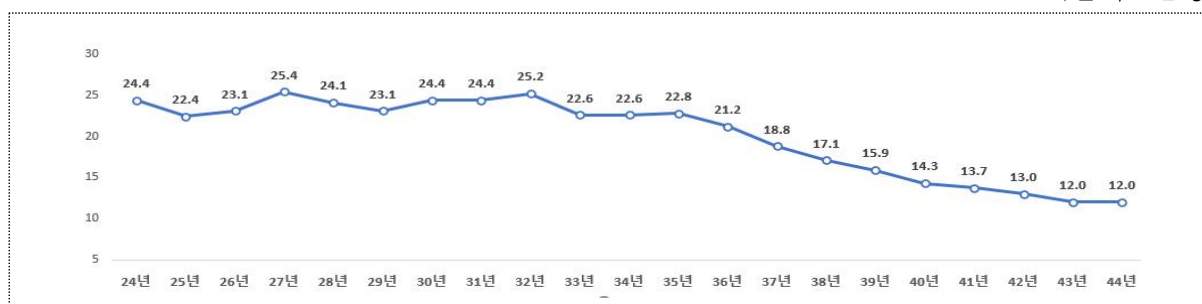
* 북한이탈주민으로 병역면제 처분 이후 병역이행을 희망하여 병역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신청, 병역판정검사 후 현역병으로 입영한 현황임.

□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에 의한 병역면제 규정을 삭제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병역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려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에서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를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부여하려는 취지를 가짐.

□ 현재 국내 병역 자원은 감소 추세에 있고 추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병역 자원의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과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병역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게 되면 감소 추세인 병역자원의 수급관리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음.

[20세 병역자원 규모 변동 예상 추이]

(단위: 만명)



* 자료: 병무청(2024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 또한 현재 남과 북의 대치상황 속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지리, 문화 이해도 및 북한 군 경험 등은 우리의 국방능력을 보완하는 전략적 자산으로서, 대북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병역의무의 부과로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균형적 이행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며, 북한이탈주민이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한 적응·정착을 위해 보호 및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취업·교육 등 초기 정착이 중요한 시기에 군 복무가 선행될 경우, 사회 적응이 늦어질 수 있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자립 기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일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으며, 위장 탈북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모든 북한이탈주민에게 일률적으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은 국가안보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

□ 참고로 병무청은 현재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전반적인 출원 병역감면 제도 개선과 관련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 중⁵⁾에 있음.

5) 북한이탈주민·귀화자·고아 등 전반적인 출원 병역감면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병무청과 KIDA 간 정책연구용역 추진 예정('26.5월~11월)

- 국방부 및 병무청은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문화적 배경 차이로 인한 군 부적응 문제 및 지휘부담 우려, 병역자원 수급 측면에서 효과가 미비한 점 및 관계부처(통일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통일부는 일반 국민과 달리 탈북과정 등으로 인한 신체·정신적 취약성, 문화와 언어의 차이로 군 적응 문제 발생 가능성, 초기 정착에의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다른 체제에서 성장·탈북 경험 등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08

※ 참고자료

○ 북한이탈주민(남성) 입국 현황(최근10년간)

* 통일부 통계 자료

(‘25. 12월말 기준, 명)

연도	‘25년	‘24년	‘23년	‘22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인원	25	26	32	35	40	72	202	168	188	302

○ 북한이탈주민(남성) 연령대별 입국 현황

* 통일부 통계 자료

(‘25. 12월말 기준, 명)

구분	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인원	9,578	653	1,712	2,648	2,179	1,413	613	360

※ 입국당시 연령 기준이며,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 등에 있는 일부인원은 제외된 수치로 입국인원과 차이가 있음.

○ 북한이탈주민(남성) 현재 연령별 현황

* 통일부 통계 자료

(‘25. 12월말 기준, 명)

구분	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인원	8,351	6	208	896	1,924	1,836	1,902	1,579

※ 현재 연령 기준이며,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 등에 있는 일부인원 △사망자, 국적상실자(1,957명)은 제외된 수치로 입국인원과 차이가 있음.